

세부 프로그램	상세내용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불인정 공통 항목 - VAT - 임차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 자산성 물품 구입비,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 단순 경비(출장비, 식대, 인건비, 공공요금 등) - 상품성·단발성(일회성 판매용)·판매용 제품 제작 비용 -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참여기업의 역할이 불확실한 용역비(ex. 3자 위탁개발 등) - 단순 자금 지원, 단순 원자재 조달,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비 -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 그 외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p>홍보물 제작 (해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 현지 판매망 구축, 바이어에 대한 홍보,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홍보물 제작을 지원 - 홍보물에 대한 통번역 지원 - 해외 마케팅용 브로슈어, (전자)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 해외 SNS 게시용 및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물 제작 * 협약 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여 결과물을 실물로 제출하여야 함 (홈페이지는 링크, e-카달로그 등은 파일로 제출)
<p>시제품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 양산 이전의 성능 개선·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 및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기존 또는 신규 고객 대상 제품 공급을 위한 Sales용 샘플 제작 - 개발 제품의 수요기업 필드테스트를 위한 샘플 제작 - 전시회 및 수요기업 대상 홍보용 샘플 제작 - 시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한 인증/평가 시험분석 지원 - 국내외 제품인증 및 인증마크 획득 지원 - 성능·안전성 검증 시험성적서 취득 및 인증획득 지원 - 공인인증 시험비용, 인증신청비, 심사비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불인정 항목 - 단순 완제품 양산, 양산형 금형 등 자산성 물품 제작·비용 - 단순 원재료 구입 비용

세부 프로그램	상세내용
<p>홍보물 제작 / 디자인·마케팅 지원 (국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기업전환, 사업재편, 고급화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지원 - 홍보물에 대한 통번역 지원 - 브로슈어, (전자)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 SNS 게시용 및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물 제작 - 효율적 제품 등 홍보 관련 지원 - 제품·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개선 - 기업 CI, BI 등 기업 이미지 개선 디자인 및 컨설팅 * 협약 기간 내 제작을 완료하여 결과물을 실물로 제출하여야 함 (홈페이지는 링크, e-카달로그 등은 파일로 제출)
<p>종합 패키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프로그램 중 입주기업 수요에 맞게 2가지 이상을 매칭·연계하여 운영하는 패키지 프로그램 ○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해외) - 수출 물류비 지원 - IP R&D - 시제품 제작 - 시험 인증 - 홍보물 제작(국내) - 디자인·마케팅 지원

붙임 2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자료	비고
공통	0 닥터FTZ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닥터FTZ를 통한 컨설팅을 진행하여야만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전 해당 서류를 우선 제출 바랍니다.(기제출 업체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식1,2
	1 지원신청서	서식1
	2 사업계획서	서식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제출 업체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식4
	5 참여기업 자료제공 약속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대상여부 확인용
	8 최근 3년 재무제표 * 전년도 재무제표 미발행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9 최근 3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년단위로 발급하여야 함(총 3부).	
	10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11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상세 견적서, 원가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음		
해당시	12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3 공장등록증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3-69호, 2023. 7. 1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